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6월 1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)

□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민·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, 민·관 협력방식으로 수 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무한돌봄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,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

록 함(안 제5조).

- 라.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및 수탁자의 의무, 수탁자의 손해배상, 원상복 구,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마.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).
- 바. 무한돌봄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함(안 제22조).
- 사.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23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 그 역할이 다른데 구성위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	○ 그렇게 생각함.
○ 네트워크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는 무엇인가?	○ 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 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임.

의 질 내 용 답 변 내 용 ○ 재원과 정보가 공기관이 가지고 ○ 실질적인 시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복지 영역이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음. 강화되어야만 주민들에게 실질적 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짐. 센터 는 물론 네트워크팀 운영의 효율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충분히 검토 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 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**요지** : 없음

7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 게 적용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, 저소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, 조손가정,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무한돌봄센터

- 제3조(설치)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(이하 "네트워크팀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・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
 - 2. 솔루션위원회 운영,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

- 3.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
- 4.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
- 5.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
-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, 위기가정 사례관리
- 2. 통합사례회의(네트워크팀, 협력기관 공동) 진행
- 3.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
- 4.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
- 제5조(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,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, 위탁계약, 시설의 관리·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및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6조(조직 등)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,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 장이 정한다.
 -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·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
 - 1. 센터장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 - 2. 사례관리전문가 "가"급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 - 3. 사례관리전문가 "나"급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

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
- 4. 사례관리전문가 "다"급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
- 5.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
-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- 1.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2.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·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3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4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5.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.
 - 6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- 7.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

할 수 없다.

- 제8조(손해배상)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·수탁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·수탁계약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원상복구)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,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- 1.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 - 2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
 - 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 - 4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
- 제11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

- 제12조(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 시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와 부천시무한돌봄 센터솔루션위원회(이하 "솔루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- 3.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·자원연계 자문· 현장개입·문제해결 논의
 - 2.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3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 - 2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위 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

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
- 3.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.
 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

- 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- 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2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2조(보고)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
 - 4. 시설의 증축,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5.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

-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23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
 -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.
 -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595호
의 결	2010. 6. 18
년월일	(제161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6. 4.

제 출 자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민·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, 민·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무한돌봄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,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및 수탁자의 의무, 수탁자의 손해배상, 원상복 구.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.

- 마.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).
- 바. 무한돌봄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함(안 제22조).
- 사.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23조).

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 게 적용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, 저소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, 조손가정,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무한돌봄센터

- 제3조(설치)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(이하 "네트워크팀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

- 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・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
 - 2. 솔루션위원회 운영,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
 - 3.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
 - 4.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
 - 5.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
 -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, 위기가정 사례관리
 - 2. 통합사례회의(네트워크팀, 협력기관 공동) 진행
 - 3.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
 - 4.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
- 제5조(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,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

- 3년 이내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, 위탁계약, 시설의 관리·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및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6조(조직 등)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,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 장이 정한다.
 -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·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따라 시장이 정한다.
 - 1. 센터장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 - 2. 사례관리전문가 "가"급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 - 3. 사례관리전문가 "나"급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
 - 4. 사례관리전문가 "다"급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
 - 5.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
 -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.

-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- 1.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- 2.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·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3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4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5.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.

- 6.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.
- 7.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- 제8조(손해배상)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·수탁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·수탁계약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원상복구)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,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

-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
- 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- 4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제11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

- 제12조(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 시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와 부천시무한돌봄 센터솔루션위원회(이하 "솔루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- 3.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·자원연계 자문· 현장개입·문제해결 논의
- 2.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3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
 - 2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위 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

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
- 3.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.
 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

-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
 - 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 - 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 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2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

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2조(보고)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
 - 4. 시설의 증축,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5.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
 -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- 제23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
 -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.
 -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